

2024학년도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전문석사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자료

2024. 2. 23.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목 차

▷ 교육이념, 교육목표, 연혁	1
▷ 교직원현황, 시설, 시설 내 기관, 부서	3
▷ 주요 학사/행사일정	4
▷ 성적평가 기준	5
▷ 수강신청 안내	6
▷ 장학	8
▷ 등록학기, 학점이수, 재이수, 수료, 학위수여기준	10
▷ 성적경고, 유급, 재학연한, 휴학, 제적, 종합시험	11
▷ 필수과목 중 실습과목	12
▷ 기타 안내사항	13
▷ [붙임] 종합시험 시행지침	17
▷ [붙임] 실무연계교육(실무수습) 운영지침	20
▷ [붙임] 충남대학교 법률센터 활동 안내	22

교육이념

“지역봉사, 대국민법률서비스 향상, 인류애적 창의, 국가전략영역개발”이라는 교육이념은 국민에 대한 사법서비스에 충실한 윤리적 전문법조인의 양성을 목표로 하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과, 학문의 연구 및 교육을 통하여 인류와 국가의 발전에 공헌하는 것을 요구하는 고등교육법상 교육이념, 그리고 창의, 개발, 봉사라는 충남대학교 건학이념을 토대로 하고 있음

교육목표

풍부한 교양, 인간 및 사회에 대한 깊은 이해와 자유·평등·정의를 지향하는 가치관을 바탕으로 건전한 직업윤리관과 복잡다기한 법적 분쟁을 전문적,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식 및 능력을 갖춘 법조인의 양성을 교육목표로 한다.

연혁

- 1952. 5. 25 도립 충남대학교 문리과대학 법학과로 개설
- 1981. 대덕캠퍼스로 이전 법정대학으로 분리
- 1989. 법과대학으로 독립
- 2008. 3. 법학전문대학원 예비인가
- 2008. 9. 28. 법학전문대학원 설립인가(정원 100명, 법학전문석사, 6학기)
- 2009. 3. 1. 초대원장 서영제 교수 취임
- 2009. 3. 2. 제1기 입학(100명)
- 2010. 3. 2. 제2기 입학(105명, 정원 내 100명, 정원 외 5명)
- 2011. 3. 2. 제3기 입학(106명, 정원 내 100명, 정원 외 6명)
- 2011. 4. 1. 2대 원장 이재곤 교수 취임
- 2011. 6. 학사관리강화방안으로 4.5만점 체계에서 4.3만점체계로 변환
- 2012. 1. 전문박사학위(S.J.D) 과정 신설(정원 12명)
 법학전문석사과정 졸업 이수학점이 90학점에서 92학점으로 조정
- 2012. 2. 24. 법학전문석사 학위수여식(제1회 80명)
- 2012. 3. 2. 제4기 입학(102명, 정원 내 100명, 정원 외 2명)
- 2013. 1. 21. 법학전문대학원 평가 인증(인증기간 2012년 ~ 2016년)

- 2013. 2. 1. 3대 원장 맹수석 교수 취임
- 2013. 2. 24. 법학전문석사 학위수여식(제2회 94명)
- 2013. 3. 2. 제5기 입학(105명, 정원 내 99명, 정원 외 6명)
- 2014. 2. 25. 법학전문석사 학위수여식(제3회 93명)
- 2014. 3. 2. 제6기 입학(106명, 정원 내 100명, 정원 외 6명)
- 2015. 1. 5. 4대 원장 손종학 교수 취임
- 2015. 2. 25. 법학전문석사 학위수여식(제4회 94명)
- 2015. 3. 2. 제7기 입학(104명, 정원 내 100명, 정원 외 4명)
- 2016. 2. 25. 법학전문석사 학위수여식 (제5회 95명)
- 2016. 3. 2. 제8기 입학(106명, 정원 내 100명, 정원 외 6명)
- 2017. 1. 4. 5대 원장 명재진 교수 취임
- 2017. 2. 25. 법학전문석사 학위수여식(제6회 93명)
- 2017. 3. 2. 제9기 입학(108명, 정원 내 100명, 정원 외 8명)
- 2018. 1. 21. 법학전문대학원 2주기 평가 인증(인증기간 2017년 ~ 2021년)
- 2018. 2. 25. 법학전문석사 학위수여식(제7회 95명)
- 2018. 2. 28. 제10기 입학(107명, 정원 내 100명, 정원 외 7명)
- 2019. 1. 1. 6대 원장 박세화 교수 취임
- 2019. 2. 25. 법학전문석사 학위수여식(제8회 92명)
- 2019. 3. 2. 제11기 입학(106명, 정원 내 100명, 정원 외 6명)
- 2020. 2. 25. 법학전문석사 학위수여식(제9회 91명)
- 2020. 3. 2. 제12기 입학(110명, 정원 내 100명, 정원 외 10명)
- 2021. 1. 1. 7대 원장 육소영 교수 취임
- 2021. 2. 25. 법학전문석사 학위수여식(제10회 89명)
- 2021. 3. 2. 제13기 입학(104명, 정원 내 100명, 정원 외 4명)
- 2022. 2. 25. 법학전문석사 학위수여식(제11회 107명)
- 2022. 3. 2. 제14기 입학(104명, 정원 내 100명, 정원 외 4명)
- 2023. 1. 1. 8대 원장 서보국 교수 취임
- 2023. 1. 31. 법학전문대학원 3주기 평가 인증(인증기간 2022년 ~ 2026년)
- 2023. 2. 24. 법학전문석사 학위수여식(제12회 97명)
- 2024. 2. 23. 법학전문석사 학위수여식(제13회 109명)

교직원현황

전임교원 31명, 조교 3명, 직원 6명(2024. 2. 23. 기준)

시설

층 별	주 요 시 설
6층	교수회의실, 교수연구실, 명예교수실, 법조검임교수실, 교수휴게실, 세미나실, 학생상담실, 학술지편집실(동아리자료실), 남학생휴게실
5층	교수연구실, 석좌·초빙교수연구실, 강사휴게실/대학원생공동연구실, 세미나실
4층	교수연구실, 법학도서관, 학생회실, 열람실, 세미나실, 컴퓨터실, 법학연구소/학술지편집실, 세종지적재산권연구소/평가자표비치실
3층	열람실, 여학생휴게실(수유실), 법률센터
2층	원장실, 부속실, 부원장실, 행정실, 학과사무실/학생지도센터, 강의실, 학생상담실, 공무원(여)휴게실/당직실
1층	강의실, 모의법정, 대강당, 학생휴게실, 스터디룸, 공무원(남)휴게실, 택배보관실(외부)

시설 내 기관, 부서

- 법학전문대학원(원장, 부원장, 학과장)
 - 특허법무대학원(원장 : 법학전문대학원장이 겸직, 부원장)
 - 일반대학원(법학과 주임교수 : 학과장 겸직)
 - 법학연구소(소장)
 - 세종지적재산권연구소(소장)
 - 학생지도센터(센터장)
 - 행정실(실장)
 - 학과사무실
- 유관기관: 법률센터(센터장)

주요 학사, 행사 일정

월	주요 학사, 행사	월	주요 학사, 행사
`24. 3	2. 28. 입학(별도 입학식 없음) 4. 제1학기 개강 4-8. 수강신청변경 25-28. 수강신청 취소 28. 수업일수 1/4선	9	2. 2학기 개강 2-6. 수강신청 변경 25-30. 수강신청 취소기간
4	5. 수업일수 1/3선 24. 수업일수 1/2선 - 휴학 시 등록금 유효기간 ★ 중간고사기간 ★ 중간 강의평가기간	10	1. 수업일수 1/4선 11. 수업일수 1/3선 26. 수업일수 1/2선 - 휴학 시 등록금 유효기간 ★ 모의시험(3차)/졸업시험 ★ 2025학년도 신입생 원서접수기간 ★ 중간고사기간 ★ 중간 강의평가기간
5	16. 수업일수 2/3선 23. 수업일수 3/4선 27. 개교기념일 ★ 2024-1 장학관련 서류 접수 - 5월 중순 ~ 6월 중순	11	15. 수업일수 2/3선 26. 수업일수 3/4선 ★ 변호사시험 원서접수기간 ★ 2025학년도 신입생 면접고사 ★ 2024-2 장학관련 서류 접수 - 11월 중순 ~ 12월 중순
6	24. 하기방학 ★ 기말고사기간 ★ 법조윤리 시험 접수시작(6월말) ★ 모의시험(1차)/졸업시험 ★ 강의평가	12	23. 동기방학 ★ 기말고사 기간 ★ 실무수습기간 ★ 강의평가
7	12. 제1학기 성적발표 ★ 실무수습기간 ★ 성적발표 후 장학신청접수기간	`25. 1	14. 제2학기 성적발표 ★ 변호사시험 ★ 실무수습기간 ★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 2024-2 장학금 지급(2025. 1월 말)
8	5~9. 제2학기 수강신청기간 20~23. 등록금고지, 납부기간 23. 학위수여식(2022학년도 후기) ★ 법조윤리 시험 ★ 모의시험(2차)/졸업시험 ★ 실무수습기간 ★ 2024-1 장학금 지급(8월 말)	2	3~28. 수강신청기간 25. 학위수여식(2023학년도 전기) ★ 학점취득 인정시험(신입생)

* 학교 사정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성적평가 기준

▣ 수강인원 11명 이상

구 분	등 급	과목성적	평균평점
A : 35%	A+ : 교수가	4.3	4.001 ~ 4.300
	Ao : 정함	4.0	3.701 ~ 4.000
	A- : 정함	3.7	3.301 ~ 3.700
B : 50%	B+ : 교수가	3.3	3.001 ~ 3.300
	Bo : 정함	3.0	2.701 ~ 3.000
	B- : 정함	2.7	2.301 ~ 2.700
C : 11~15%	C+ : 교수가	2.3	2.001 ~ 2.300
	Co : 정함	2.0	1.701 ~ 2.000
	C- : 정함	1.7	1.301 ~ 1.700
D이하 : 0~4%	D이하 : 교수가 정함	D : 1	1.001 ~ 1.300
		F : 0	1이하

▣ 외국어 과목, 수강인원 10명 이하 과목: A가 최대 40%, B이하는 교수가 정함

▣ P/F 과목: 법조윤리, 법률정보조사, 법문서작성, 모의재판, 법률실습

수강신청 안내 : 2024학년도 제1학기 학년별 강의 목록

□ 1학년 과목

과목번호	분반	과목명	이수구분	비고	수강정원
4110-1004	00	형법	전공필수		40
4110-1004	01	형법	전공필수		40
4110-1004	02	형법	전공필수		40
4110-1083	00	지적재산권 기초	전공선택	특성화 과목	
4110-1157	00	민법입문	전공선택		60
4110-1157	01	민법입문	전공선택		60
4110-1158	00	계약법	전공필수		60
4110-1158	01	계약법	전공필수		60
4110-1159	00	계약법II	전공필수		60
4110-1159	01	계약법II	전공필수		60
4110-1162	00	국가조직론	전공선택		60
4110-1162	01	국가조직론	전공선택		60
4110-1166	00	법조윤리	전공필수		60
4110-1166	01	법조윤리	전공필수		60
4110-1173	00	법률정보조사	전공필수		

※ 1학년 신청금지 과목: 법문서작성(2학년만 신청 가능), 모의재판, 법률실습(3학년만 신청가능)

□ 2학년 과목

과목번호	분반	과목명	이수구분	비고	수강정원
4110-1020	00	형사소송법	전공선택		40
4110-1020	01	형사소송법	전공선택		40
4110-1020	02	형사소송법	전공선택		40
4110-1061	00	헌법소송법	전공선택		60
4110-1061	01	헌법소송법	전공선택		60
4110-1063	00	국제법	전공선택		
4110-1067	00	환경법	전공선택		
4110-1068	00	행정구제법	전공선택		
4110-1086	00	저작권법	전공선택	특성화 과목	
4110-1115	00	상법총론	전공선택		60
4110-1115	01	상법총론	전공선택		60
4110-1116	00	어음수표법	전공선택		60
4110-1116	01	어음수표법	전공선택		60
4110-1117	00	민사소송법 II	전공선택		60
4110-1117	01	민사소송법 II	전공선택		60
4110-1174	00	법문서작성	전공필수		18
4110-1174	01	법문서작성	전공필수		18
4110-1174	02	법문서작성	전공필수		18
4110-1174	03	법문서작성	전공필수		18
4110-1174	04	법문서작성	전공필수		18
4110-1174	05	법문서작성	전공필수		18
4110-1193	00	민법연습1	전공선택		
4110-1196	00	지적재산권 협상론	전공선택	특성화과목	

□ 3학년 과목

과목번호	분반	과목명	이수구분	비고	수강정원
4110-1018	00	가족법	전공선택		
4110-1022	00	민사소송법사례연구	전공선택		96
4110-1028	00	민사재판실무	전공선택		
4110-1030	00	집단적 노동관계법	전공선택		
4110-1052	00	상사사례연구	전공선택		
4110-1072	00	행정법사례연구	전공선택		
4110-1100	00	법사상론	전공선택		
4110-1108	00	형사종합사례연구	전공선택		60
4110-1108	01	형사종합사례연구	전공선택		60
4110-1135	00	민사기록형사례연구	전공선택		60
4110-1135	01	민사기록형사례연구	전공선택		60
4110-1144	00	회사법실무연구	전공선택		
4110-1149	00	형사특별법	전공선택		
4110-1154	00	영화방송미디어법	전공선택	특성화 과목	
4110-1164	00	모의재판	전공필수		25
4110-1164	01	모의재판	전공필수		25
4110-1164	02	모의재판	전공필수		25
4110-1164	03	모의재판	전공필수		25
4110-1165	00	법률실습	전공필수		
4110-1168	00	검찰실무II	전공선택		
4110-1187	00	실무행정법	전공선택		
4110-1188	00	경찰실무	전공선택		

* 개설요건 3명 이상

장학

■ 신청자격

- 이수학점: **직전학기 14학점** 이상을 이수로 하되, 졸업학기를 신청한 학생은 **10학점** 이상을 이수
 ※ 신입생의 경우 “한국장학재단 소득분위” 및 “입학등수”로 차등 지급
- 평균평점: 당해 학기 평균평점 **2.25이상**, (단, 성적우수(대학원) 장학금은 **2.75이상**)

■ 법학전문대학원 취약계층 장학금 신청 [*신청안내 및 기간 별도 공지_홈페이지]

- **한국장학재단 “법학전문대학원 취약계층 장학금”신청 필수!!★**
- 한국장학재단 소득분위 지원구간 판정을 받아야 장학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음★

■ 장학 종류

구분	종류	비고
교내	로스쿨학업증진	· 제외대상자 - 직전학기 취득학점·평균평점 미달자 - 미등록 휴학자 - 수업연한 초과자 - 등록금이월자 (중복)
	로스쿨학업장려	
	성적우수(대학원)	
	영탑 [*신청자]	
	학생활동 [*대상자]	
교외	취약계층(한국장학재단)	· 장학금액은 등록금 전액을 초과할 수 없음

■ 일정

학기	공고 및 서류접수	장학금 지급	비고
1학기	매년 5월~6월경	매년 7월~8월	장학위원회 심사 및 면접
2학기	매년 10월~11월경	매년 12월~익년 1월	

※ 해당 일정은 매학기 예산 배정 및 장학위원회 심사 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공고 및 서류접수 해당자: 한국장학재단 소득분위 판정 기혼자**

*나머지 학생은 별도 서류 제출 없음(소득분위 및 성적 등 행정실에서 자료 취합)

■ 심의 사항

학기	심의사항	비고
1학기 2학기	학적상태, 취득학점 및 평균평점	* 학생 제출자료 없음
	한국장학재단 소득분위	* 학생 제출자료 없음
	기혼자 부모소득분위	* 관련 서류 제출 (홈페이지 참고)

- 취득학점 및 평균평점: **직전학기**

[예) 2024학년도 1학기 장학 선발은 2023학년도 2학기 성적 및 이수학점으로 심의]

※ 2024학년도 1학기 **신입생**은 **입학등수(성적)**으로 심의

■ 지급 방법

- 장학금 수혜 대상자: 학생 본인에게 별도 문자 안내_수령 계좌 조사 및 확인
- **한국장학재단 및 교육부 [중복지원의 방지] 법률 및 규정에 따라 대출금 상환 후 남은 잔액에 대하여 학생 본인의 수령 계좌로 지급 예정.**

■ 장학 금액

학기	종류	심의사항	금액	비고
1학기 2학기	[교외] 취약계층장학	한국장학재단 소득분위 “기초생활수급~3분위”	등록금 전액	·해당 학기 배정 예산에 따라 법전원 장학위원회에서 장학 금액 결정 ※ 매학기 소득분위 지원구간 및 지원금액은 변동될 수 있음. ·석차 동순위자 처리 1. 취득학점이 많은자 2. ‘전필’성적이 우수한자
		한국장학재단 소득분위 “4분위~9분위”	등록금 일부	
[교내] 로스쿨학업증진 로스쿨학업장려 성적우수(대학원)	각 학년 성적 1등	등록금 전액		
	각 학년 성적 2등~	등록금 일부		

※ 등록금 전액 장학금을 제외한 나머지 장학 금액은 매 학기 변동 될 수 있음
 (*학기별 예산 및 차순위자(동순위) 인원)에 따라 조정 가능)

■ 기혼자 서류 제출 및 심사 절차 안내

- 대상: 한국장학재단 소득분위 판정 결과 “기초생활수급자~9분위”내 학생 중 기혼자
- 제출방법: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홈페이지-장학 및 복지계시판”공고_참고 제출
 ※ 공고일: 1학기-5월~6월 / 2학기-10월~11월
- 선발방법: 서류 평가 및 면접(희망자 대상)
- 심의사항: 부모의 소득분위 판정 후 학생 장학 심사 시 반영
 - 부모의 소득분위는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를 기준으로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산정
 - 기혼자 서류 심사 시 “부모소득분위” 합산하여 심사, 학생 해당 장학금액이 조정될 수 있음
 - “서류 미비자, 사유 불인정, 서류 미제출자”에 해당하는 경우 학생 해당 장학금액이 조정될 수 있음

■ 유의사항

- 재학생 소득구간 판정 제한
 - “법학전문대학원 취약계층 장학금” 신청에 따른 소득구간 판정은 [한국장학재단]을 통해서만 신청받음(*한국장학재단 소득분위 판정결과를 바탕으로 장학 심의)
 -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학생 본인의 소득구간 별도(추가) 판정은 불가능
 - 추가합격 신입생의 경우 최종합격일정 등으로 불가피하게 한국장학재단에 장학금을 신청하지 못한 학생에 한하여 추가 서류 접수 및 별도 심의를 통하여 법학전문대학원 장학위원회에서 지급 여부 결정
- “미등록 휴학자”는 선발 제한
 - 등록금고지서가 확정되기 전에 휴학하면 장학금 대상자에서 탈락하므로 반드시 등록금고지서 확정 후 휴학할 것
- 지원 횟수 제한
 - 학생당 법학전문대학원 취약계층 장학금 수혜 횟수 6학기(타대학(원)에서 지원받은 횟수 포함)

■ 관련 규정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홈페이지-장학제도)

- 충남대학교 장학생 선발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및 지침
-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장학금 지급 지침

등록학기, 학점이수, 재이수, 수료, 학위수여기준 안내

■ 등록학기 및 학년구분

- 총 6학기등록, 1학기 당 21학점 까지 이수가능
- 통상 1~2학기를 1학년, 3~4학기를 2학년, 5학기이상을 3학년으로 구분

■ 학기당 최소 이수학점

- 6학점이상(미이수시 인정등록학기로 인정 안됨, 학기유급 처리)
- 재학연한 초과자는 제외

■ 재이수안내

- C+이하 과목만 재이수 가능, 재이수시 B+가 취득할 수 있는 최고학점

■ 수료기준 이수학점

- 2009년 ~ 2011년 입학 : 총 90학점(전필 35학점, 전선 55학점)
- 2012년, 2013학년 입학 : 총 92학점(전필 35학점, 전선 57학점)
- 2014학년 입학 : 총 92학점(전필 34학점, 전선 58학점)
- 2015학년 이후 입학 : 총 92학점(전필 35학점, 전선 57학점)

■ 수료기준

- 1학년 수료 : 30학점이상 60학점 미만 이수
- 2학년 수료 : 60학점이상 92학점 미만 이수
- 3학년 수료 : 92학점이상 이수

■ 학위수여 기준

- 수료학점인 92학점(전필35학점, 전선57학점 이상)을 취득, 종합시험(졸업시험)을 통과

성적경고, 유급, 재학연한, 휴학, 제적, 종합시험 안내

■ 성적경고

- 성적경고 : 평균평점이 2.25이하일 경우(단, P/F과목과 절대평가를 하는 외국어과목에서 취득한 성적등급의 평점은 제외)

■ 유급

- 성적경고와 같은 방식으로 산출하여 각 학년 성적의 평균평점이 2.25이하일 경우
- 단, P/F, B+이상의 성적은 유효함

■ 재학연한

- 5년(10학기, 유급기간 포함)

■ 재학생 휴학

- 최대 누적 2년(입영휴학은 제외), 육아휴학가능(출산예정일 3개월 전부터 만8세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 최대 2년간 가능)
- 신청은 매학기 수업 1/2선 이전까지 가능(복학 시 등록금 납입하지 않음)
- 수업일수 1/2선 ~ 2/3선은 휴학은 가능하나 복학 시 등록금 재납부해야 함

■ 신입생 입학년도 1학기 휴학관련

- 휴학할 수 없음(단, 군 입대 또는 6주이상의 입원치료 진단서 첨부하는 경우 또는 임신·출산·육아의 경우 가능)

■ 제적

- 3학기 연속 성적경고인 경우
- 누적 2번 유급인 경우
- 재학연한을 초과한 경우
- 그 외 학칙에 정한 내용에 해당된 경우

■ 종합시험(졸업시험) - 별첨자료(종합시험 시행지침) 참조

- 4학기 이상 이수자
-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주관 변호사시험 모의시험(6월, 8월, 10월 실시)을 졸업시험으로 함

필수과목 중 실습과목 안내

■ 법조윤리(1학년 1학기, 3학점)

- 법조윤리 시험: 변호사시험을 치르기 전에 필수로 응시, 합격해야 함
- 법조윤리 시험 응시자격 : 법조윤리 과목을 이수한 자

■ 법률정보조사(1학년 1학기, 1학점)

■ 법문서 작성(2학년 1학기, 2학점)

- 20명 이내의 수업으로 진행
- 6개로 분반되며 필요에 따라 소규모 분반 강의 및 대규모 통합식 강의로 구성

■ 법률실습(3학년 1학기, 1학점)

- 3학년 1학기 기말고사 전까지 각종 증명서를 제출할 것
- Pass기준 : 변호사실무실습+전문기관실무실습 통합 40시간 이상, 법률상담실습(법률센터 주관), 사회봉사활동 8시간 이상 이수해야 함
- **실무수습 인정요건** : 학생지도센터에서 정하는 양식(평가서)을 수습기관으로부터 받아 학생지도센터로 3학년 1학기 중간고사 전까지 제출(자세한 절차는 추후 공지 확인)
- **사회봉사활동 인정요건** : 반드시 8시간 이상, 3학년 1학기 중간고사 전까지 봉사활동 확인서 학생지도센터로 제출
- 법률상담 : 법률센터에서 상담 자료를 받아 작성하여 제출
- 2018학년부터 적용, 2018학년도 이전 학번은 실습 80시간 이상, 법률상담실습, 사회봉사활동 10시간 이상 이수해야 함

■ 모의재판(3학년 1학기, 1학점)

- 반드시 학기말에 실시한 모의재판을 **기록물(서면자료, 모의재판동영상)**로 학과사무실로 제출(모의법정 또는 ZOOM에서 촬영할 것, 녹화물이 제대로 찍혔는지 확인 후 제출)
- 촬영기자재는 학과사무실에서 대여할 수 있음

기타 안내사항

▣ 학사안내 등 공지 관련

- 법학전문대학원 관련 안내는 로스쿨 홈페이지에 공지됨 수시 확인 필요
- 그 외 공통 학사안내는 충남대학교 홈페이지에 공지됨 수시 확인 필요
- 개별적 통보, 특별한 상황(행사 등)일 경우만 문자(SMS)안내

▣ 학과사무실에 전화 시 소속(법학전문대학원)과 과정(전문석사)을 먼저 말하고 통화

- 법학전문대학원, 일반대학원, 특허법무대학원 등 다른 소속과 석사, 박사 학생이 있어 신속한 안내를 위해 본인 소속과 과정, 학년을 말씀하세요.

▣ 생활관 이용, 신청, 접수

- 생활관 홈페이지에서 공지하므로 수시로 확인
- 접수기간 등 일정 엄수

▣ 주차질서: 주차장이 비좁은 관계로 주차질서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기초예절 지키기

- 학생생활관 규정, 생활수칙 준수 등
- 시설물 파손, 무단 이용 및 이동 금지

▣ 실무수습과정안내

- 학생지도센터를 통해 접수 및 배정을 받음

▣ 지도교수 배정안내(3월 중)

- 학생지도센터를 통해 접수 및 배정을 받음

▣ 사물함, 열람실

- 사물함, 열람실은 학생회와 도서관자치위원회(도자위)가 관리, 운영
- 열람대 형광등 교체는 도자위에 요청

▣ 시설물 수리요청

- 학교홈페이지 바로바로(042-821-8585) 서비스에 신청하면 거의 당일에 해결됨

▣ 스터디룸, 세미나실, 이용안내

- 로스쿨 홈페이지에서 강의실별 이용현황을 확인 후 신청서를 작성하여 학과사무실에서 승인 후 사용
- 학교행사(학회, 회의) 등 주요 일정이 있을 경우 승인이 되었어도 학교행사가 우선

■ 군 미필자 유의사항

- 공지는 2학년 2월 말, 3월초 접수, 3월 말 병무청으로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제출함
- 해당 기간을 놓칠 경우 추가 접수 없음.

<병역법>

제58조(의무·법무·군종·수의장교 등의 병적 편입)연혁판례문헌

- ① 현역병입영 대상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할 경우 의무·법무·군종 또는 수의(수의) 분야의 현역장교 병적에 편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호에 따른 군종(군종) 분야의 병적편입 대상 종교의 선정기준과 군종 분야의 현역장교 선발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6.4>
 1.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3. 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목사·신부·승려 또는 그 밖에 이와 동등한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각 소속 종교단체에서 자격을 인정한 사람
 4. 수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의무·법무·군종·수의사관후보생을 지원한 사람은 의무·법무·군종·수의사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할 수 있으며, 그 편입 대상, 제한연령, 선발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6.4>
 1.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군전공의수련기관에서 정하여진 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사람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 자격을 얻기 위하여 해당 연수기관이나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정하여진 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사람
 3. 목사·신부·승려 또는 그 밖에 이와 동등한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의 자격을 얻기 위하여 신학대학·불교대학 또는 그 밖에 성직자의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대학에 다니고 있는 사람
 4. 수의사 자격을 얻기 위하여 수의과대학(수의학과가 설치된 대학의 수의학과를 포함한다)에 다니고 있는 사람
- ③ 제2항에 따라 의무·법무·군종·수의사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된 사람은 35세까지 특수병과(특수병과)의 현역장교 병적에 편입할 수 있으며, 의무·법무·군종·수의사관후보생의 병적에서 제적된 사람은 그 신체등위에 따라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하거나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13.6.4>
- ④ 제1항·제3항 및 제59조에 따라 현역장교의 병적에 편입할 사람에 대하여는 군부대에 입영시켜 군사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 ⑤ 입영부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사람이 군부대에 입영한 경우에는 입영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신체검사를 하여야 하며, 신체검사의 결과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현역 복무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15일 이상의 치유기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 질병 또는 심신장애의 정도와 치유기간(치유기간을 알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명시하여 귀가시켜야 한다. 군사교육 중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15일 이상의 치유기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 ⑥ 병무청장은 제5항에 따라 귀가한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신체검사를 한 후 신체등위에 따라 병역처분을 변경하거나 다시 입영시켜야 한다. 다만, 치유기간이 3개월 미만으로 명시되어 귀가한 사람에 대하여는 재신체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다시 입영시킬 수 있다.
- ⑦ 제1항에 따른 군종 분야 병적편입 대상 종교의 선정 및 군종 분야 현역장교의 선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군종장교운영심사위원회를 두며,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⑧ 제2항에 따라 의무·법무·수의사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된 사람에 대한 의무·법무·수의 분야의 현역장교 선발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6.4>

[전문개정 2009.6.9]

<병역법 시행령>

제118조의4(의무·법무·수의사관후보생 선발인원 결정)

① 국방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외교부장관, 법무부장관 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필요인원을 매년 1월 31일까지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국방부장관: 다음 각 목의 필요인원

가. 의무 분야의 현역장교 5년 후 필요인원

나. 법무 분야의 현역장교 2년 후 필요인원

다. 수의 분야의 현역장교 4년 후 필요인원

2. 보건복지부장관: 공중보건 의사 5년 후 필요인원

3. 외교부장관: 국제협력 의사 5년 후 필요인원

4. 법무부장관: 공익법무관 2년 후 필요인원

5.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공중방역수의사 4년 후 필요인원

② 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으면 의무·법무·수의 분야의 현역장교 충원을 등을 고려하여 의무·법무·수의사관후보생 선발인원을 결정한다.

[본조신설 2013.12.4]

제119조(의무·법무·군종·수의사관후보생의 병적 편입)연혁판례

① 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의무·법무·군종·수의사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할 수 있는 사람은 징병검사 대상자, 현역병입영 대상자 및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1.11.23, 2013.12.4>

1. 의무 분야는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군전공의 수련기관에서 정해진 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사람(이하 "군전공의요원"이라 한다)으로서 33세까지 그 과정을 마칠 수 있는 사람

2. 법무 분야는 사법연수원에서 정해진 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30세까지 그 과정을 마칠 수 있는 사람 또는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정해진 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30세까지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사람

3. 군종 분야는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신학대학·불교대학이나 그 밖에 성직자의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대학에 재학 중인 사람으로서 28세까지 그 과정을 마칠 수 있는 사람

4. 수의 분야는 수의과대학(수의학과가 설치된 대학을 포함한다)에 재학 중인 사람으로서 28세까지 그 과정을 마칠 수 있는 사람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의무사관후보생을 지원하려는 사람은 군전공의요원으로 채용되는 해의 2월 10일까지, 법무사관후보생을 지원하는 사람은 사법연수원에 입교한 해 또는 법학전문대학원 2학년이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 수의사관후보생을 지원하는 사람은 수의과대학 본과 1학년이 되는 해의 5월 31일까지 의무·법무·수의사관후보생 지원서(전자문서로 된 지원서를 포함한다)를 해당 수련기관, 사법연수원, 법학전문대학원 또는 수의과대학의 장을 거쳐 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종사관후보생을 지원하려는 사람은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출원 및 선발 등의 절차에 따라 군종사관후보생 지원서(전자문서로 된 지원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무·법무 또는 수의 분야 현역장교 병적에 편입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중보건 의사·징병전담 의사·공익법무관 또는 공중방역수의사의 편입을 원한다는 뜻을 지원서에 기재할 수 있다. <개정 2010.7.21, 2011.11.23, 2013.12.4>

③ 병무청장은 제2항에 따른 지원자 중에서 의무·법무·수의사관후보생을 선발할 때에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신체등위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점수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점수를 합산한 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발하되,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한 동점자가 있을 때에는 신체등위가 높은 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점수가 높은 순, 생년월일이 빠른 순으로 선발한다. 이 경우 신체등위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점수는 신체등위 1급부터 3급까지는 100점, 신체등위 4급은 90점으로 한다. <신설 2013.12.4>

1. 의무사관후보생의 경우: 의사·치과 의사 또는 한의사 면허시험 성적을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점수

2. 법무사관후보생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점수

가. 사법연수원생의 경우: 사법시험 성적을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점수

나. 법학전문대학원생의 경우: 해당 법학전문대학원 입학 시 법학적성시험 성적을 50점 만점으로 환산한 점수와 법학전문대학원 1학년 성적을 50점 만점으로 환산한 점수를 합산한 점수

3. 수의사관후보생의 경우: 해당 수의과대학 입학 시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을 50점 만점으로 환산한 점수와 수의과대학 예과 1·2학년 평균 성적을 50점 만점으로 환산한 점수를 합산한 점수

④ 병무청장은 제3항에 따라 의무·법무·수의사관후보생을 선발한 경우에는 그 명단을 해당 수련기관, 사법연수원, 법학전문대학원 또는 수의과대학의 장 및 지방병무청장에게 각각 송부하여야 하며, 선발자 명단을 송부받은 지방병무청장은 의무·법무·수의사관후보생 병적에 편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23, 2013.12.4>

⑤ 병무청장은 국방부장관으로부터 군종사관후보생 선발자 명단을 송부받은 경우에는 이를 해당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고, 선발자 명단을 송부받은 지방병무청장은 군종사관후보생 병적에 편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23, 2013.12.4>

⑥ 의무·법무·군종·수의사관후보생으로서 제1항에 따른 제한연령에 이르기 전에 정해진 과정은 마쳤으나 법제5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격을 얻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는 제한연령에 이를 때까지 계속 의무·법무·군종·수의사관후보생으로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3.12.4>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군종사관후보생의 선발 및 의무사관후보생 수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12.4>

[전문개정 2009.12.7]

종합시험 시행지침

제정 2016. 1. 1.

제1차 개정 2016. 12. 26.

제2차 개정 2017. 12. 05.

제3차 개정 2023. 01. 19.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사운영규정 제31조의2 제4항에 따라 위임된 종합시험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행시기) 종합시험은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가 실시하는 변호사시험 모의시험(이하 ‘모의시험’이라 한다)이 아닌 경우에는 대학원위원회에서 정하는 시기에 실시하되 실시 30일 전까지 적당한 방법으로 공고해야 한다.

제3조(시험과목) 시험과목 및 배점은 법무부 시행 변호사시험의 공통과목·선택과목과 동일하게 한다.

제4조(출제 및 채점) ① 종합시험의 출제는 모의시험으로 한다.

② 종합시험의 채점위원은 해당 분야의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소속 전임교수 중에서 원장이 위촉한다.

③ 종합시험의 채점, 시험감독 또는 강평을 담당하는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소속 전임교원에게는 각 업무의 난이도, 소요 시간 등 제반 사정에 따라 정당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원장은 제6조에서 정한 예비시험의 출제, 채점, 첨삭, 시험감독, 또는 강평을 담당할 법학전문석사급 채점위원 또는 전문위원이나 기관을 위촉할 수 있다.

⑤ 전항의 예비시험 출제는 변호사시험 및 모의시험 문제를 문제은행으로 하여 이를 변형하거나 그대로 출제하는 방식으로 한다.

제5조(합격 기준) ① 종합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졸업사정시로부터 소급하여 응시할 수 있었던 3회의 모의시험(이하 일자가 앞서는 순서에 따라 각각 1차, 2차, 3차 모의시험이라고 한다) 중 3회 이상 전 과목에 응시하여 회차당 각 과목별 만점의 40% 이상(원점수 또는 조정점수)을 1회 이상 취득하여야 한다. 단, 예비시험에 응시한 경우에는 모의시험을 1회 응시한 것으로 간주하며 예비시험의 취득점수는 합격 기준으로 고려하지 않는다.

제6조(예비시험과 석차공개) ① 예비시험은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 비실명으로 점수와 석차를 공개한다.

1. 자격 : 4개 학기 이상 이수한 자(최종 학기의 방학기간은 고려 하지 아니 함.)

2. 과목 : 공법, 민사법, 형사법

3. 형식 : 선택형과 사례형

② (삭제)

③ 예비시험은 해당 응시자격을 갖추고 실제 응시할 수 있었던 첫 번째 것에 한하여 1회만 응시할 수 있다. 응시자격을 갖춘 각 예비시험 당시 휴학 중이더라도 미리 신청한 경우에는 응시할 수 있다.

④ (삭제)

⑤ 예비시험의 구체적 실시방안은 실시 2주 전까지 적당한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의2 삭제

제7조(합격자사정)

① 종합시험 합격자사정은 대학원위원회에서 실시한다.

② 합격자사정은 종합시험의 결과를 주된 고려사항으로 하여 통과, 미통과로 한다.

③ 합격자사정의 결과는 사정 후 2주 이내에 공지한다.

제8조(기타) 본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부득이한 학사일정에 따라 달리 정할 필요가 있는 사항은 대학원위원회와 교수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정한다.

부칙

제1조(적용범위) 2016. 1. 1. 이전에 졸업사정 대상자가 되었던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2조(경과규정) 2016. 1. 1. 당시 이미 4개 학기 이상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3차 예비시험만을 실시하고, 제6조 제2항의 예비시험 가산비율의 3배수를 가산하며, 제5조 제1항 제1호의 “45%”를 “40%”로 변경하여 적용한다.

부칙(2016. 12. 1.)

제1조(시행일) 개정 지침은 2017. 1. 1.부터 적용한다.

제2조(적용범위) 개정 지침은 시행일 전 이미 실시한 예비시험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부칙(2017. 12.)

제1조(시행일) 개정 지침은 2018. 1. 1.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규정) 2018. 1. 1. 당시 이미 종전 규정에 따른 예비시험에 응시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예에 따라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1. 1, 2, 3차 예비시험에 응시한 경우,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2. 1, 2차 예비시험에만 응시한 경우 개정 지침에 따른 2차 예비시험에 응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종전 규정에 따른 3차 예비시험의 결과로 간주하여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3. 1차 예비시험에만 응시한 경우 개정지침에 따른 2차 예비시험에 응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종전 규정에 따른 2, 3차 예비시험 결과로 간주하여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개정 지침은 2023. 1. 19.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규정) 2023. 1. 19. 당시 이미 종전 규정에 따른 예비시험에 응시하여 가산점을 취득한 자는 그 선택에 따라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거나 개정 지침(가산점 미적용)을 적용할 수 있다. 합격자사정까지 선택하지 않은 경우에는 개정 지침을 선택한 것으로 간주한다. 수료자는 개정 지침에 따른 예비시험을 응시한 것으로 간주한다.

실무연계교육(실무수습) 운영지침

제1조(목적) 본 지침은 충남대학교(이하 ‘본교’ 라고 한다)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대학원’ 이라 한다) 전공필수 과목인 법률실습의 이수를 위하여 필요한 실무수습, 법률봉사활동과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법조인으로서의 소양 함양과 실무능력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률실습 과목 이수) ① ‘법률실습’과목의 Pass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40시간 이상의 실무수습 시간 이수
 2. 8시간 이상의 법률봉사활동 시간 충족
- ② 전항 제2호의 법률봉사활동은 무료법률상담, 법교육 봉사활동, 본교 법률상담소 리걸클리닉 활동 등 법률을 통한 봉사활동을 말한다.
- ③ 학생지도센터는 제2항 제1호의 실무수습과 관련한 별지 제2호의 서식에 따라 「실무수습 결과보고서」 및 외부기관 평가표, 제2호 법률봉사활동과 관련한 봉사활동을 인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취합하여 매년 5월 말까지 법률실습 담당 교원에게 전달한다.
- ④ 법률실습 담당 교원은 전항에 따라 전달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법률실습 과목의 평가를 실시하며, 평가 후 강의, 세미나, 토론 기타 적절한 방식으로 강평 및 지도를 한다.

제3조(실무수습 업무) 학생지도센터는 실무수습의 공고, 신청접수, 수습인원 추천·배정, 결과보고서·평가표 수령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제4조(법률봉사활동 업무) 학생지도센터는 법률봉사활동에 대해 안내, 협조요청, 인증서류 취합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제5조(실무수습 공고) 학생지도센터는 대학원 홈페이지에 실무수습의 일시 및 장소 등 필요한 안내사항을 공고한다.

제6조(실무수습 대상) 실무수습 대상은 본교 대학원 재학생이면 누구나 해당되며 학년 제한을 두지 않는다. 단, 실무수습 기관에서 제한을 두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실무수습 기관) 실무수습 기관은 변호사 1인 이상이 재직하며 법률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기관으로 공공기관, 사기업, 단체, 법무법인(유한 포함), 법률사무소 등이 해당된다.

제8조(실무수습 신청) 실무수습 신청은 대학원 홈페이지에 공고에 정해진 기간과 절차

에 따라 한다.

제9조(실무수습 배정) ① 실무수습 기관이 추천인원의 정함이 없이 선발하는 경우 학생은 자유롭게 실무수습에 지원할 수 있다.

② 실무수습 기관이 추천인원을 정하여 추천을 요구하는 경우 지원자가 추천인원을 초과할 시 다음 각 호 순의 기준에 따라 추천인을 정한다.

1. 이수 학기 수가 더 많은 학생을 우선 배정한다.

2. 전 호의 기준이 동일할 경우 직전 학기 기준 평점평균이 더 높은 학생을 우선 배정한다.

3. 전 호의 기준으로도 우선순위가 정해지지 않을 때는 학생지도센터장이 결정한다.

③ 추천을 요구하는 기관에 학교의 추천을 받아 실무수습이 확정된 학생이 다른 기관에 추가로 실무수습을 지원하는 경우 그 기관에 대한 추천 순위에서 후순위로 배정한다.

④ 전항의 제한은 해당 실무수습 기간이 속하는 방학기간 동안까지만 효력을 가진다.

제10조(실무수습 종료 후 서류제출) ① 학생은 실무수습 종료 후 14일 이내에 별지 제2호의 서식에 따라 「실무수습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학생지도센터로 제출한다.

② 「실무수습 평가표」는 실무수습기관에서 대학원으로 직접 보내는 것이 원칙이나 해당 기관에서 원할 경우 평가표를 밀봉 처리하여 수습한 학생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제11조(실무수습 학생의 의무) ① 실무수습 배정이 확정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철회할 수 없다.

② 실무수습 기간 동안 복장과 품행을 단정히 하며 무단결석, 지각 등 불성실한 태도로 본교의 명예에 누를 끼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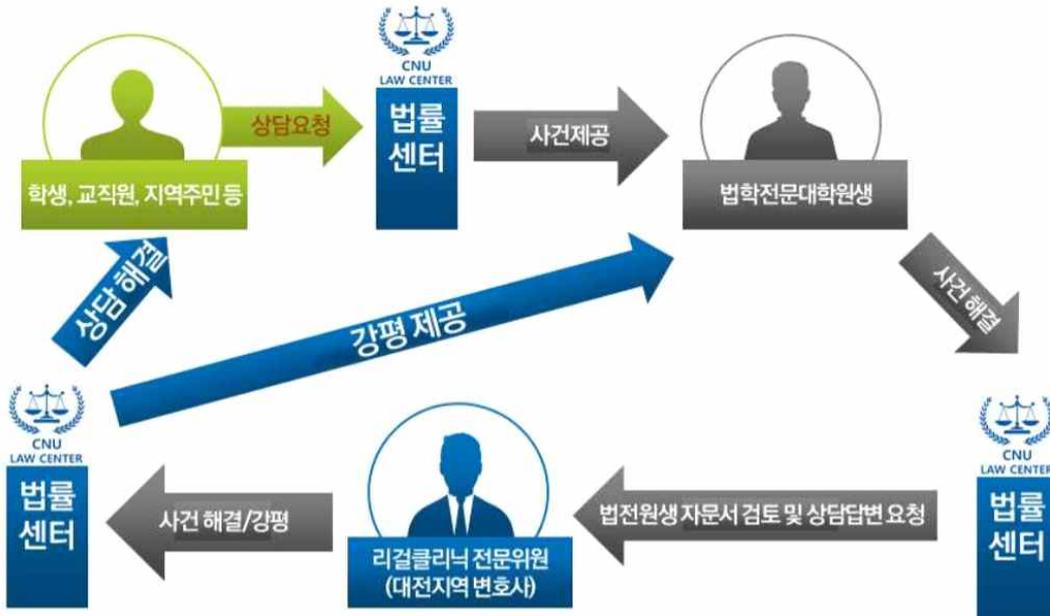
충남대학교 법률센터 활동 안내

<법률관련 경력 개발을 위해 적극적 참여 바람>

▣ 법률센터 멤버십 대상(2024. 3. 중 모집 예정)

● 무료법률상담 기초 상담

● 학생, 교직원, 지역주민의 법적 문제 해결 + 법학전문대학원생 실습



● 특징

가공 없는 순수한 상담 내용을 통한 실습

최근 청년변호사가 홍보용으로 활용하는
“네이버 / 로톡 등에서의 답변 과정”을 미리 실습할 수 있음

현직 지역 변호사 강평을 통한 실무적 접근 방법 실습

대전지방변호사회 추천 변호사에게 판례와 이론을 통한
법리적인 해결방법을 비롯하여 실무적인 해결방법을 배울 수 있는 기회 부여

온라인 실습으로 참여율 제고

변호사시험 준비로 인한 비교과활동의 참여가 제한되는 상황에서
온라인 실습으로 참여 부담 경감

1학년도 부담없이 참여 권장, 1건당 2시간 봉사인정

- 컨퍼런스 발표 및 토론 참여
- 지역 초·중·고생 법교육 강사 참여

- 법률봉사활동(법률상담, 법률교육)
- 각종 자료집 에디터, 공익활동 프로그램 매니저 활동
- 기타 공익법률활동(프로보노)



▣ 송무실습: 법전문생 전체 대상, 2학기 또는 방학 중 모집 및 진행



충남대학교 법률센터
법학전문대학원 건물 3층
<http://cnu.ac.kr/~cnulegal>
042-821-5819 / lawcenter@cnu.ac.kr